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52363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이영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남 담당변호사 김영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창혁

변론 종결 2020. 11. 11

판결 선고 2020.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 513, 066원 및 이에 대한 2013 . 5.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12. 3.경 원고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9. 5.부터 2013. 5. 3.까지 간질환, 비형간염 등으로 1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C의 형)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합계 60,513,06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C은 2007. 4.경에는 비형간염의, 2010. 2. 29.경에는 만성 비형간염의 각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자로서 수령한 보험금 60,513,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은 원고의 주장 사실과 같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고단3676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다만 실제로는 이 피고의 통장에 지급된 돈을 사용했다는 취지로는 주장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변제기의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것인데,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13. 6. 11.경 고지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고,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그로부터 앞서 본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후인 2020 . 7. 24.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동주